

<b>제2025-89호</b> <b>2025년 10월 10일(금)</b>	<b>시</b>  <b>보</b> <b>여수시</b>	<b>시정지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31호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허가 고시(거문도 수협 위생위판장)            1
- 여수시 고시            제2025-432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2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84호            도로지정 공고[소라면 복산리 881번지]            3
- 여수시 공고            제2025-2892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5
- 여수시 공고            제2025-2895호            공인등록 공고(여수시 공고 제2025-2895호)            11
- 여수시 공고            제2025-2902호            전문건설업 등록-(유)중앙엔지니어링            12
- 여수시 공고            제2025-2905호            여수 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결정 변경(안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            13
- 여수시 공고            제2025-2906호            전문건설업 등록-영만종합건설(주)            14

**입 법 예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918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정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여수시 공고            제2025-2923호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정정조례안 입법예고            35

<b>회 략</b>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431호

##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허가 고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대한 개설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일

### 여수시장

□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허가 사항

지정 번호	위판장 명칭	관리자	소재지	시설규모(m <sup>2</sup> )			위판장 시설명세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위판장		
2025 -002	거문도수협 위생위판장	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장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2-1	2,085	1,757	306	경매장, 소방설비 등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0. 2.

여 수 시 장 (인)

##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881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9. .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881번지
2. 도로면적 : 125㎡
3. 도로길이 : 30.7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25	
소라면 복산리	881	전	1,966	125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여수시 공고 제 2025 - 2892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대상지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대상지

### 2.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운영 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

###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4. 행정예고(공고)

-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 시행기관: 여수시 교통도로국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 공고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21일 18:00, 21일간
- 공고방법: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설치예정: 2025. 12. 31. 한.

## 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위치(붙임 2)

- ① 무선초등학교(화장동 754)
- ② 구봉초등학교(국동 19-10)
- ③ 안심초등학교(소호동 494)

##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제출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21일 18:00
  - 제출장소: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 주차차량과(학동)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1-659-5864)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061-659-41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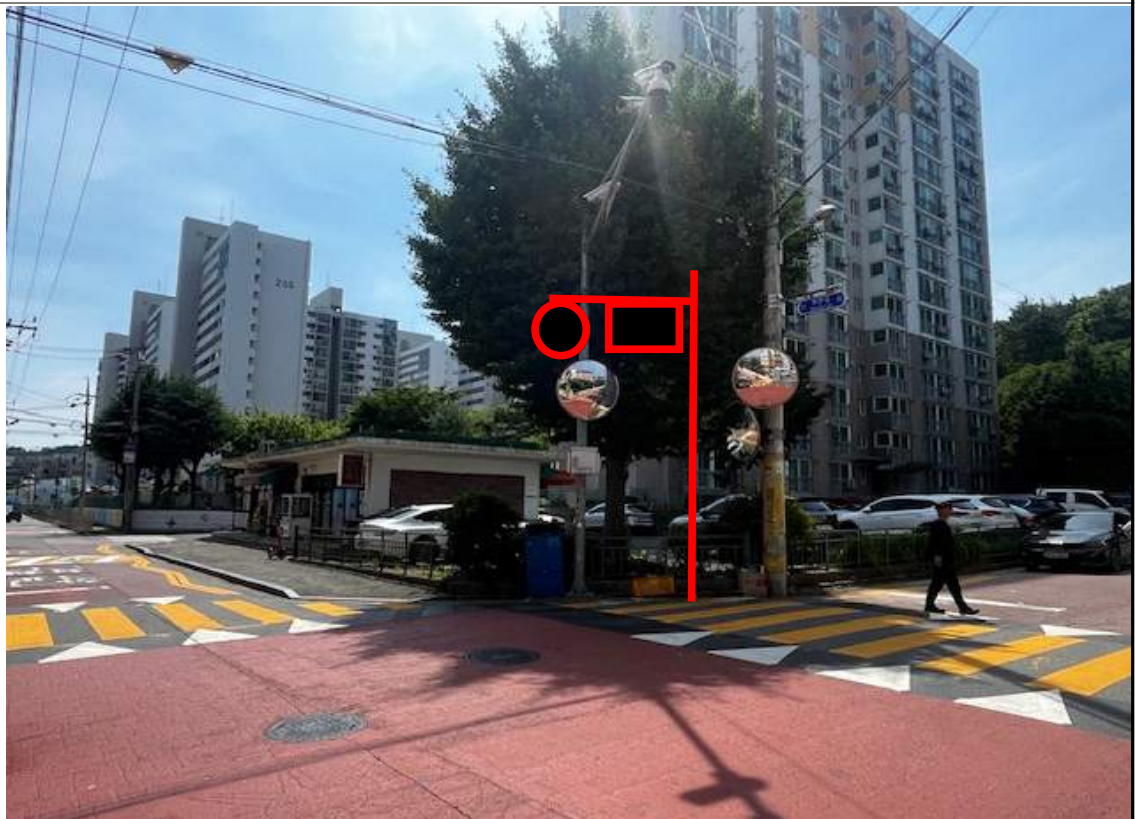


무선초등학교 (화장동 754)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안)

신설  
위치도



구봉초등학교(국동 19-10)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안)

신설  
위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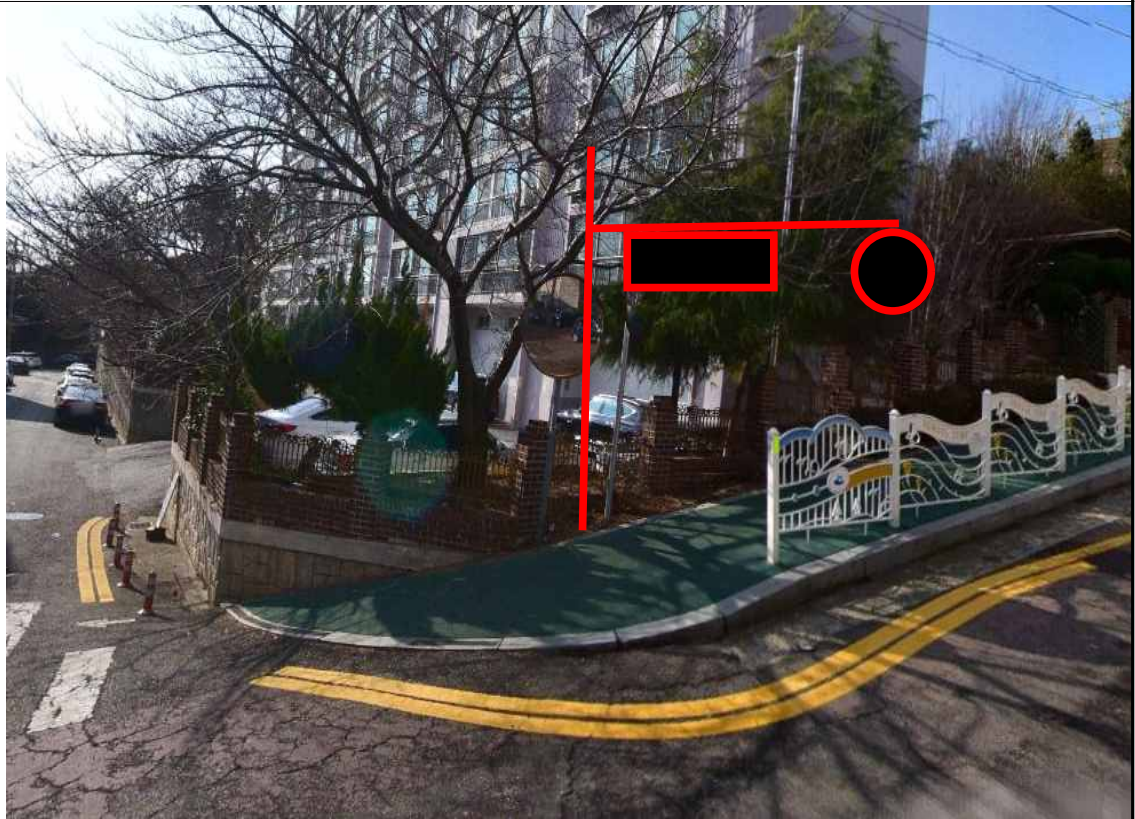


# 안심초등학교(소호동 494)

신  
설  
위  
치  
도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안)



여수시 공고 제2025-2895호

##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제6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30.

## 여 수 시 장

1. 등 록 일 : 2025. 9. 30.
2. 등록사유 : 신규등록
3. 등록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인영	관리부서	사용일
등록 (2303)	여수시통합지출관인		회계과	'25. 10. 1.

##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유)중앙엔지니어링(이은선, 이형주)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5
3. 법 인 등록번호 : 201314-0007446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여수-25-다-08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025. 9. 30.

2025년 9월 30일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7	가스공급설비	여수시 적량동 867번지 일원	-	증) 17,567	17,567	-	

■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7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신설: 17,567㎡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저장시설) 설치를 위함

2. 여수 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설비) 도면: 게재 생략

3.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공고기간: 2025.10. 2. ~ 2025.10.17.(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영만종합건설(주)(김형태, 신도식)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30-3
3. 법 인 등록번호 : 206211-0023114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5-사-08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025. 10. 1.

2025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25-2922호

###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제6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 여 수 시 장

1. 등 록 일 : 2025. 10. 2.
2. 등록사유 : 신규등록
3. 등록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인영	관리부서	사용일
등록 (2304)	여수시분임징수관인		징수과	'25. 10. 10.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3.

여 수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A	7	국지 도로	175	소로2-539 (제도리 76)	제도리 73-5	일반 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A	· 도로(신설) - 위치: 화정면 제도리 73-5번지 - 폭원: 7m, 연장=175m	지역 교통망과 연계된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2. 열람기간: 2025. 10. 3. ~ 2025. 10. 17.(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본청 1층)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세부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공고 제2025-2925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10.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10. 10 ~ 2025. 10. 23. (14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최\*\* 등 76건)
3. 공고내용
  - 가. 귀하의 소유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카메라(고정, 이동식) 또는 안전신문고로 단속되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나. 위 사전통지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 여수시 주차차량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659-5864)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없이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공고 제2025-2926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분(독촉)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0.

##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5. 10. 10 ~ 2025. 10. 23. (14일)
2. 대 상 자: 불임참조(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박\*\* 등 100건)
3. 공고내용

#### □ 부과 고지서 반송

-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독촉 고지서 반송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체납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증가산금(최고60개월까지 최대75%)이 부과됩니다.
  -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주차차량과(☎061-659-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 여 수 시 장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2026년 섬박람회 행사준비 및 지원업무의 연속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필요
- 2026.12.31.까지 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담보할 필요

#### 2. 주요내용

- (조례 부칙 개정) 2026년 12월 31일까지 섬박람회지원단 존속기한 연장

3.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 ~ 10. 10.(8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메일(ghkstn92@korea.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청사)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총무과장)

- 전 화 : 061)659-3241, 팩스 : 061)659-58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실·국장의 직급과 본청의 담당관·과장의 직급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사업소의 단·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및 출장소장·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시본청

제3조(실·국)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교육국, 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을 둔다.

제4조(실·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청년인구정책관을 둔다.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 및 행사 관리
2. 보안업무, 비상계획, 직장예비군훈련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조직·인사·교육·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5. 선거 및 국민투표
6.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
7. 국정·도정·시정 시책추진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총괄
9. 지방분권사무, 지방이양사무, 자치경찰업무
10.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및 총괄관리
11.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12. 물품의 구입, 수선, 계약, 행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5.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과 예방활동
16. 민방위 행정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7. 지역 정보화 추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
18. 행정정보화·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19.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관리 및 외국인 등록 업무

20. 토지거래 및 지적업무 처리

21. 중부민원출장소 지도 감독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산업지원과, 경제일자리과, 신산업에너지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정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의회 운영 지원

5. 산업단지관리·지원총괄 및 입주업체 관리

6. 산단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8.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노동관련 단체지도 및 근로자 복지향상대책 수립 시행

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원 업무

12.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종합계획수립(기획·창출·개선·지원) 및 시행

14.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기금 관리

16.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재개발에 관한 사항
17. 지역·마을공동체 사업 관리
18. 미래산업(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시대 등) 사무에 관한 사항
19.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시행
2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22.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업무와 세입결산 관리

제7조(문화관광체육국)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문화유산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행사
2. 시민회관·문예회관의 임대·유지관리
3. 관광진흥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4. MICE 유치에 관한 사항
5.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업무
6. 국가유산 정책 수립 및 지정문화유산 지정·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정책 개발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2.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
4.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관련 업무
5. 노인 및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6. 장례문화 관련 업무
7. 여성복지 및 가족문화 관련 업무
8. 보육 및 아동, 청소년 지원 업무
9. 교육지원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청·지방대학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 및 관광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해양수산물) ① 해양수산물에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를 둔다.

② 해양수산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항만정책, 해양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및 사후활용 지원
3. 수산경영지원 및 수산물 유통·가공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질서 유지,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5. 해난사고 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어장 이용개발 및 증·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7. 연안관리 및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기후생태과,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관리과, 자원시설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후·환경 정책 계획 수립·시행
2.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업무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4. 청소행정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원시설 설립 및 관리 전반
8. 만홍·월내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산지조성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에 관한 사항
12.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리

제11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행
2.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승인 관리
4.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5. 산림·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조성사업 수립 시행
7.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집행
8. 하천관리, 농업기반조성,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9. 균형발전, 살기 좋은 도시, 지역업무 전반
10. 여수국가산단 보상업무 위·수탁 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도개발에 따른 행정지원업무 추진
1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3.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14. 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5. 건축 및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제12조(교통도로국) ① 교통도로국에 교통과, 주차차량과, 도로과, 도로시설 관리과를 둔다.

② 교통도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
3. 차량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신설·확장에 관한 사항
5. 국도(동 구간) 및 지방도 유지관리

6.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제13조(섬박람회지원단) ① 섬박람회지원단에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대책과를 둔다.

② 섬박람회지원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섬박람회 준비 및 지원
2. 섬박람회 연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섬박람회 시민 참여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디지털 기반 및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
5. 섬박람회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섬박람회 숙박음식 대책에 관한 사항
7. 섬박람회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8. 섬박람회 연계 섬지역 관광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지역 이외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

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를 둔다.

제15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와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와 통합보건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여수시 주동1길 32

에 둔다.

③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농산물유통과를 둔다.

④ 센터의 소관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소를 설치 할 경우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2.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행
4.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지도
5. 농촌생활개선사업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농업·농외소득 증대와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지원
8.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9. 돌산갓 등 우리 품종 재배연구, 가공지원 등 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유통 대책 추진
11.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항

## 제4장 사업소

제2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상하수도사업단에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제21조(단·소장) 사업소에 각각 단·소장을 두며, 단·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소장에게 분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상하수도사업단장

가. 수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나. 먹는 물의 수질관리 및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 제5장 출장소

제23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중부민원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두며, 그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출장소의 위치·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장 읍·면·동

제2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장 조직관리위원회

제28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공 고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 여 수 시 장

###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새정부 국정과제(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안내’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안)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지정기준)**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정 요청 시 상인 조직 구성을 명시화
- **조례안 제4조(지정 신청)**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항에 “**변경 신청**” 문구 추가

○ 조례안 제5조(지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 조례안 제6조(지정 취소)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 대표자에게 통보” 문구 추가

3.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 ~ 10. 22.(20일간)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경제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할 곳

- 주 소 : 우)59723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

- 전 화 : 061)659-4547, 팩스 : 061)659-5816

- 전자우편 : [yangchae96@korea.kr](mailto:yangchae96@korea.kr)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4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붙임1 일부개정 조례안

###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지정 신청)”을 “(지정 및 변경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고자”를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로 한다.

별지 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sup>2</sup> )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전라남도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단포함)</li> <li>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li> <li>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li> <li>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li> <li>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정기준) &lt;신 설&gt;</p> <p><u>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u></p> <p>제4조(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p>	<p>제3조(지정기준) ① <u>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u></p> <p><u>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u></p> <p><u>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u></p> <p>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u></p> <p>제4조(지정 및 변경 신청) -----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 -----</p>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5조(지정)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6조(지정 취소)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

③ (현행과 같음)